

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6허10012 등록무효(상)

원 고 주식회사 바프

대표이사 A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주 담당변리사 이창훈

소송복대리인 특허법인 아주김장리 담당변리사 이해린

피 고 주식회사 머거본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철

변 론 종 결 2026. 7. 23.

판 결 선 고 2026. 9.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5. 11. 26. 2023당345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 4호증)

1) 출원일 등

출원일	2021. 1. 13.
등록결정일	2021. 6. 1.
등록일	2021. 6. 4.
등록번호	제1736168호

2) 표장:

바프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가공처리된/냉동된/건조된/조리된 과일 및 채소, 가공된 견과류, 건조된 과일믹스, 보존처리된 견과류(냉동한 것은 제외), 조미처리된 견과믹스

나. 선등록상표(갑 제3호증)

1) 출원일 등

출원일	2016. 5. 24.
등록일	2017. 4. 21.
등록번호	제1248023호

2) 표장: **VAP**

3) 지정상품: ① 상품류 구분 제5류의 호흡기관용약제, 소화기관용 약제, 건강관리용 약제, 의료용 소화기관식물 자연균형유지용 프로바이오틱제, 단백질 식이보충제, 미네랄 식이보충제, 마그네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영양보충제, 레시틴 식이보충제, 아미노산/미네랄/미량영양소 식이보충제, 아연 식이보충제, 칼슘보충제, 칼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영양보충제, 다이어트용 캡슐, 식이보충제용 건강보조식품, ② 제29류의 과실에서 추출한 미네랄/비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과실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비타민/미네랄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공식품, 과실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채소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채소에서 추출한 미네랄/비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채소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비타민/미네랄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공식품, ③ 제30류의 차(茶), 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 차음료, 곡물조제품, 빵, 과자, 곡분 및 곡물 조제품, 도정한 곡물, 가공한 곡물, 곡물가공식품, ④ 제31류의 미가공 곡물, 신선한 과실, 신선한 야채, 신선한 채소, ⑤ 제32류의 과실음료 및 과실주스, 시럽 및 음료용 제제, 음료(Beverages), 음료용 시럽, 음료용 조제품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23. 10. 26.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2023. 10. 31. 법률 제19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고만 한다)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3당3452로 심리한 다음, 2025. 11. 26.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포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피고는 선등록상표의 권리자나 사용권자가 아닐 뿐 아니라 권리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을 예정도 없는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법률상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선등록상표는 구체적인 사용실태에 비추어 '브이에이피'로 호칭되므로 '바프'로 호칭되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칭이 다르고, 양 표장은 외관도 다르며 관념은 대비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양 표장이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다. 나아가 선등록상표권자가 원고의 후출원상표들에 대하여 공존동의를 한 사실도 양 상표가 실제 거래사회에서 서로 다른 출처의 상표로 인식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

가) 피고는 '스낵류, 과자' 등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바프'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바프', '배프', '밥', '뱍' 또는 '브이에이피' 등으로 호칭될 수 있으므로, 선등록상표가 '바프'로 호칭되는 경우 양 표장의 호칭이 동일하여 양 표장은 유사하다. 을 제24호증의 설문조사 결과도 'VAP'를 '바프'로 발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발음 가능성 중 하나임을 뒷받침한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제29류의 가공식품과 동일·유사하다. 한편 갑 제18호증의 공존동의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아니라 별도로 후출원된 상표들에 관한 사후 자료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유사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나. 피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당해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에는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으로써 피청구인의 상표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포함되며,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1후59 판결, 대법원 1987. 7. 7. 선고 85후46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후816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462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2005. 1. 1. 개업하

여 '스낵류·과자, 기타음료, 무역(식품)'을 종목으로 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과, 2020. 11.경 '바디프로필(Body Profile)'의 약칭인 '바프'를 활용하여 '바프 너츠', '바프 핏', '바프 밸런스' 등의 브랜드로 관련 제품을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인 스낵류·과자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표의 유사 여부

가)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후1876 판결 등 참조).

나) 외관 및 관념의 대비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바프**)는 한글 2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선등록상표(**VAP**)는 영문 대문자 3글자로 구성되어 있어 양 표장은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상이하다.

(2) 관념의 대비

선등록상표는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도 그 자체로는 조어이고, 다만 '바디프로필'의 약어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양 표장의 관념은 서로 대비하기 어렵거나 서로 다르다.

다) 호칭의 대비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되, 다만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의 대부분이 실제로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발음으로 널리 호칭·인식하고 있다는 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구체적·개별적 사정은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후2532 판결, 2005. 11. 10. 선고 2004후2093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후954 판결 등 참조).

(2) 선등록상표 'VAP'는 사전에 등재되어 일정한 발음이 정해진 단어가 아니라 영문 대문자 3개가 결합된 조어이다. 따라서 각 철자의 명칭에 따라 '브이에이피'로 읽을

수도 있고, 이를 하나의 단어처럼 '바프', '배프', '밥' 또는 '뱍' 등으로 읽을 수도 있다. 이것들이 곧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의 대부분이 선등록상표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 보건대 을 제 12 내지 16, 2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따르면, 국내 자료들에서 일본 음반회사, 외국 지명, 맥주 명칭 및 상호 등에 사용된 'VAP' 또는 'Vap'라는 문자가 '바프'라고 불리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등록상표는 적어도 '바프' 또는 '배프'로도 자연스럽게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선등록상표가 '바프'로 호칭되는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하고, '배프'로 호칭되는 경우 양 표장의 전체적인 청감이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3) 한편 갑 제5 내지 9, 19 내지 21호증, 을 제10, 11,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네츄럴 라이프(이하 '네츄럴 라이프'라고만 한다)는 2017년경부터 건강보조식품 등에 선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 2017년경 판매한 'PLUS PROTEIN' 제품에는 'VAP' 아래에 'VITAL ACTIVE PRIMARY'를 병기하고 각 영단어의 첫 글자인 'V', 'A', 'P'를 굵게 표시하였다. 2017. 10. 20. 작성된 네이버 블로그의 '원 데이클렌즈' 사용 후기에는 'VAP' 아래에 'TAKE VITALITY, BE ACTIVE, AND MAKE A PROGRESS'를 병기하고 'VITALITY', 'ACTIVE', 'PROGRESS'를 굵게 표시한 브랜드 배너가 첨부



을 제21호증의2, 1면 중 발체



을 제21호증의18, 2면 중 발체

되어 있다.

(나) 네츄럴 라이프가 운영하는 뷰티 및 헬스 정보 공유 플랫폼인 '글로우픽'에는 'VAP'와 '브이에이피'가 함께 표시되어 있고,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피부건강 각 카테고리에 관련 제품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 '스킨 콜라겐 젤리' 제품에는 2018. 3. 14.부터 작성된 리뷰가 남아 있다. 네츄럴 라이프의 페이스북에는 2020. 9. 30. '#VAP #브이에이피', 2021. 3. 23. '#DJ브이에이피'라는 문구가 게시되었다. 네츄럴 라이프는 2019. 4. 9.부터 2019. 5. 31.까지는 'VAP(밥)은 먹고 다니니?'라는 제목으로 제품을 광고하였다. 2024. 11. 11. 네이버 공식 스토어의 상품 Q&A에서 소비자가 "VAP 이거 어떻게 읽나요? 그냥 브이에이피?"라고 문의하자, 판매자인 네츄럴 라이프는 "VAP 브랜드는 영문 그대로 브이에이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선등록상표에 관한 일부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에는 'VAP'와 '브이에이피'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롯데ON, 쿠팡, 롯데아이몰 등 일부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는 '브이에이피'가 기재되어 있다.

(4) 전항과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와 일부 판매자 및 게시물 작성자가 선등록상표와 함께 '브이에이피'라는 한글 표기를 사용한 점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선등록상표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 사이에서 '브이에이피'라는 특정한 발음으로 널리 호칭·인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상표권자나 판매자가 스스로 선택한 한글 표기의 존재와 거래자 및 일반 수요자가 실제로 상표를 어떠한 호칭으로 인식하는지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 중 상당수는 선등록상표권자 또는 판매자가 작성한 광고·상품정보이거나 체험단·협찬 등 홍보성 게시물에 관한 것들이고, 일부는 등록결정일 이후의 자료이거나 작성 시점이 분명하지 않다.

(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의 상품명 역시 검색이나 상품 노출을 위하여 판매자가 입력한 정보일 수 있다. 일부 일반 소비자가 작성한 게시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수가 제한적이고, 그 공개 범위나 조회 수 등을 확인할 자료도 없다. 나아가 선등록상표의 사용 기간과 범위, 판매량과 시장점유율, 광고의 규모와 노출 정도 및 실제 수요자의 호칭을 보여 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다) 앞서 본 것처럼 네츨 라이프가 운영하는 뷰티 및 헬스 정보 공유 플랫폼인 '글로우픽'에 2018. 3. 14.부터 작성된 리뷰가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재 화면에 표시된 '브이에이피'라는 한글 브랜드 표기가 해당 리뷰 작성 당시부터 게시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또한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네츨 라이프가 'VAP'만을 표시하여 사용한 자료가 다수 존재하고, 2019. 4. 9.부터 2019. 5. 31.까지는 'VAP(밥)은 먹고 다니니?'라는 문구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2024. 11. 11.자 상품 Q&A는 등록결정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뒤의 자료일 뿐 아니라, 소비자가 선등록상표의 호칭을 직접 문의한 것 자체가 적어도 해당 소비자에게 그 호칭이 자명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라) 대비결과의 정리

양 표장은 외관이 다르고 관념은 대비하기 어렵거나 서로 다르다. 그러나 선등록상표는 '바프' 또는 '배프'로 자연스럽게 호칭될 수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따라서 양 표장이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

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2) 상품의 유사 여부

가) 관련 법리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후924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후50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과일·채소 또는 견과류 등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이고,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제29류의 가공식품과 상품의 성질과 용도, 생산·판매 부문 및 수요자의 범위가 중첩될 수 있다. 따라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동일·유사하다.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¹⁾

3) 그 밖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인지도에 관한 주장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등록결정일인 2021. 6. 1. 당시 선등록상표와의 출처 혼동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 수요자 사이에서 독자적인 출처표시로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자료 중 상

1) 2026. 6. 25. 자 원고 요약쟁점정리서면 참조.

당수는 등록결정일 이후의 것이거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HBAF'와 함께 사용된 형태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양 표장이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존동의에 관한 주장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파악되는 공존동의는, 이 사건 등록상표 이후에 원고가 별도로 출원한 상표들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이후인 2026년에 이루어진 사정에 그친다(2024. 5. 1. 시행된 개정 상표법의 공존동의제도는 그 시행 전에 이미 등록결정이 이루어진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위 공존동의는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별개의 후출원상표들에 관하여 표시한 의사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2021. 6. 1. 당시 일반 수요자가 선등록상표를 어떠한 호칭으로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공존동의만으로 등록결정일 당시 선등록상표의 호칭에 관한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 사이의 출처 혼동 가능성을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그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원고 주장의 위법사유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택수

 판사 김영기

 판사 노지환